

## 2.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(국비) 예산 전용 보고

정신건강과장 : 이경희 ☎2133-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: 김영인 ☎7544 담당 : 차주연 ☎7839

### 사업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안전부)
- 민간위탁 정신요양시설 공유재산 손해보험 예산 전용 계획 ('23.4.)

###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정신요양시설 2개소\*에 대한 손해보험 신규 가입

\*시립은혜로운집, 시립영보정신요양원

- 소요예산 : 2,102천원 (국비 50%, 시비 50%)
  - 시립영보정신요양원 : 1,242천원 (12개월)
  - 시립은혜로운집 : 860천원(9개월) ※ 민간보험 가입 해지후 4월부터 변경가입

### 예산전용 사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손해보험에 가입 필요
  - 민간위탁 정신요양시설 2개소는 수탁기관장 명의로 손해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서울시 직접 가입을 위해 민간위탁금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예산 전용

### 예산전용 내역 ('23. 5. 10.)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과목			예산액	전용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	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	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(국비)	민간이전 (307)	민간위탁금 (05)	4,880,388		2,102	4,878,286
			일반운영비 (201)	공공운영비 (02)	-	2,102	2,102	